



## 광 주 고 등 법 원

### 제 1 행 정 부

### 판 결

사        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누5312   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
원고, 피항소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A  
피고, 항소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████████도  
제 1 심 판 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광주지방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구합557 판결  
변 론 종 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 5. 14.  
판 결 선 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 6. 4.

#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#### 1. 청구취지

원고의 피고에 대한 B 건설기계에 관한 취득세 4,799,440원(2014. 3. 18. 기준, 가산세 포함)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#### 2. 항소취지

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,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(별지 관계법령 포함)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추가판단

#### 가.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

피고는, 취득세의 징세의무는 구 지방세기본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시·군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,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전라남도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,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·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갖는다. 한편,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, 제6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, 시(市)가 도세(道稅)인 취득세를 신고·납부받아 도(道)에 납입하는 것은 도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취득세를 신고·납부받는다 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도라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시는 취득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



자치단체일 뿐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취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(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나.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

피고는, 원고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, 이는 과세관청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범죄목적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원고 본인이 스스로 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더 보호받아야 하고, 따라서 범죄행위가 발각된 이후에서야 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.

살피건대, 갑 제8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C은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2011. 1. 6.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 존재하는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원고를 소유자로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,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. 9. 5.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,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갑 제3, 8,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준 데에서 더 나아가 C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고(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'혐의 없음'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),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취득세 신고도 원고가 아닌 C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, 이와 다른 전체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07-22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박병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박현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장찬수